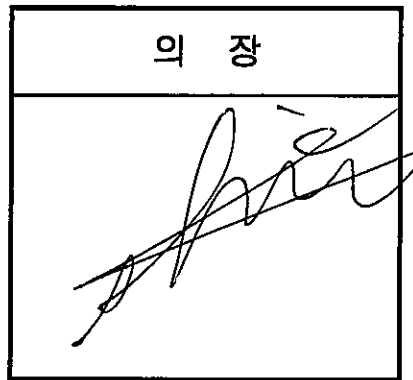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
시민 결으로 한뼘 더!

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

2018. 7.



No. 152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 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1)	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'16년 2월 10일 개성공업 전면 중단 되었으나, '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돼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화적 남북·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. - 서울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) - 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) -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6조) 등	김태수 의원 외 11명 (기획경제)	2018. 7.2.
1 (2)	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 이에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- 학교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(안 제4조) -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5조) - 학교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6조) 등	서윤기 의원 외 12명 (교육)	2018. 7.2.

향후계획

○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각 1부. 끝

12